(全매체) 2014년 5월 28일(수) 14:3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 : 중기청 재도전성장과 노용석 과장 (042-481-6840), 우창훈 사무관(6846)
기업금융과 조경원 과장(042-481-4545), 김민지 사무관(4385)
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전지원센터 이두환 센터장(02-6678-4051)
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 안재신 부장(042-480-4030)
대한법률구조공단 발전기획팀 전병욱 팀장(054-810-1041) 김재준 과장(1047)

정책체감을 위한 맞춤형 재도전 지원 본격 가동

– 『재도전종합지원센터』 개소, 심층상담 및 연계서비스 제공 –

– 재도전 특례보증 신설, 재도전기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 –

□ 경영에 실패했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인들이 정부의 **재도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효과적으로 활용**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**종합적인 맞춤형 지원**이 본격 시행된다.

○ 먼저 **전문가 상담·처방, 민관협업 연계서비스*** **제공** 등을 통해 **재도전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**를 제공해주는 **「재도전종합지원센터」**가 중소기업진흥공단내 개설·운영되며,

* 사업전환 지원(중진공), 회생컨설팅(중진공, 법원), 사업정리컨설팅(회계사회, 세무사회), 심리치유(재기개발원), 신용회복(신용회복위원회) 등

○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재기 자금 마련이 어려운 **재도전 기업인의 자금조달원 다변화**를 위해 기존 재창업 전용 정책자금*에 이어 **지역신용보증재단의 '재도전 특례보증'이 신설**되며,

* 재창업자금(중소기업진흥공단),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(신보·기보)

○ 개인회생·파산면책 등 **법적 신용회복 신청**이나 **법적분쟁 대응 및 법률 자문**이 필요한 재도전 기업인을 위한 **무료법률지원 사업**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시행된다.

[재도전종합지원센터 개소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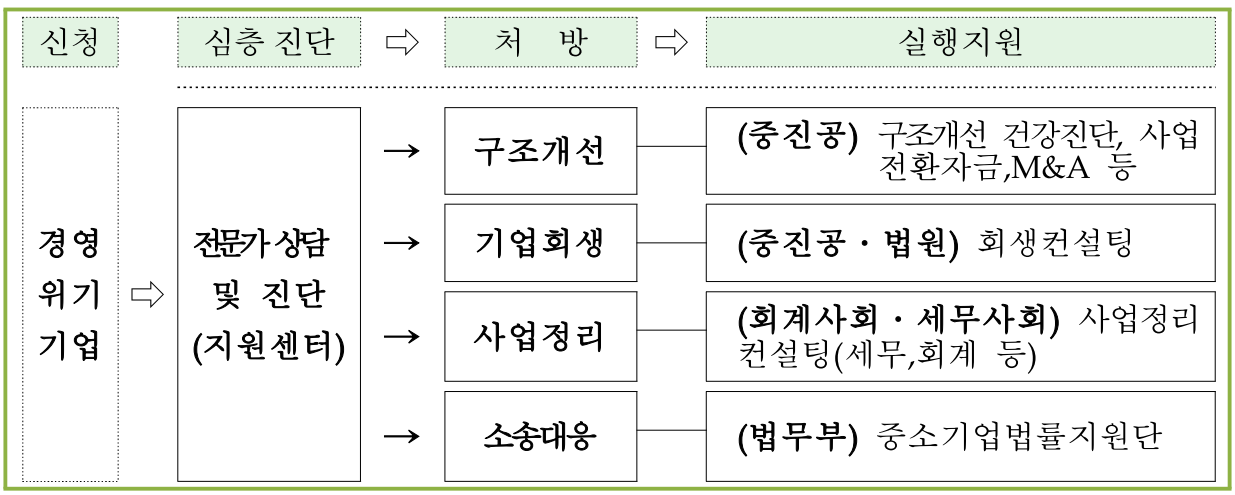
□ **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과 중소기업진흥공단(이사장 박철규)**은 재도전기업인에 대한 종합적·맞춤형 지원을 위해 **5월 28일(수) 중진공 서울지역본부*내 「재도전종합지원센터**(이하 재도전센터)**」 개소식**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
*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행복한 세상 백화점 내 위치

○ 재도전센터에서는 법무부, 신용회복위원회, 법률구조공단, 공인회계사협회, 세무사협회 등 **다양한 공공·민관기관의 전문인력이 파견**되어 재도전기업인을 대상으로 **종합상담 및 분야별 심층상담**을 통해 **맞춤형 처방을 제시**하고 **연계서비스를 제공**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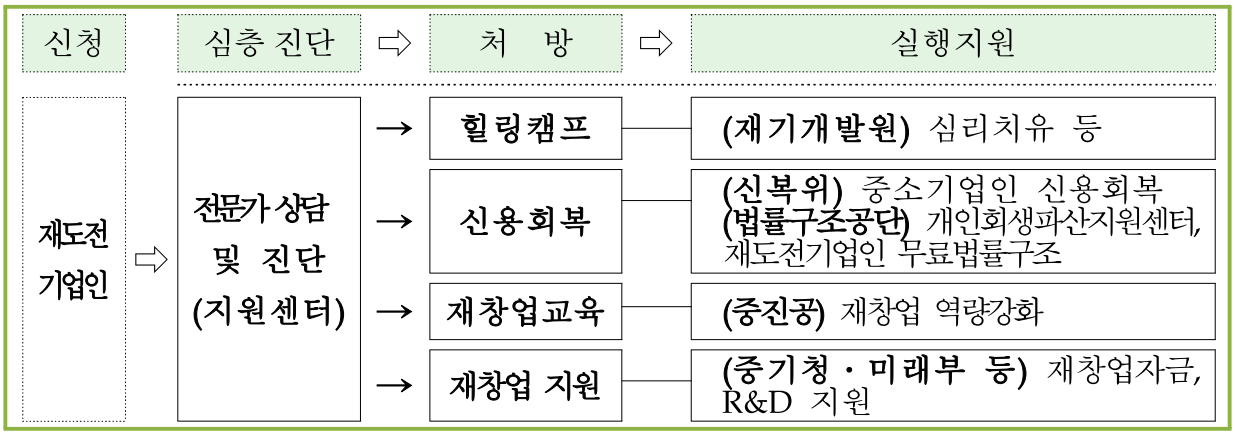
- 먼저, **경영위기 중소기업**에 대해서는 **부실정도 및 회생가능성** 등에 따라 **구조개선·기업회생·사업정리** 등 맞춤형 처방과 **사업전환지원, 회생·사업정리컨설팅** 등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

<경영위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세스>



- **재도전기업인**에 대해서는 **개인별 상황 및 재창업 준비단계**에 따라 **심리치유·신용회복·재창업 지원** 등 맞춤형 처방과 **힐링캠프식 재기교육, 재창업 역량강화교육, 재창업자금** 등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

< 재도전기업인 맞춤형 지원 프로세스 >



[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시행]

□ 한편, 중소기업청은 신용불량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재도전 기업인을 위해 **지역신용보증재단**에서도 **"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**(이하 재도전특례보증)**"을 5월 28일(수)부터 시행**한다고 밝혔다.

○ 재도전특례보증 신청대상은 **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**과 **재도전기업주*가 운영 중인 기업**으로,

- 변호사,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**"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"**에서 **신청 기업주의 도덕성과 사업성 등을 심사**하여 **지원 여부를 결정**한다.

* 재도전기업주란 재단이 대위변제한 기업과 아래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본 특례보증 신청기업의 대표자(대표이사 포함)를 말함
① 개인기업 : 대위변제기업의 대표자, 공동경영자, 실제경영자
② 법인기업 : 대위변제기업의 대표이사, 실제경영자, 무한책임사원

○ 재도전특례보증은 100% 전액보증으로,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이며, 보증료는 연 2.0%(고정)로 운영된다.

[재도전기업인 무료법률지원사업]

□ 한편, 중소기업청은 **대한법률구조공단(이사장 황선태)과 함께 기업 실패 상황**에서 발생하는 **다양한 법적 분쟁**에 대해,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재도전기업인을 위해 **"재도전기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"**을 **6월 1일부터 실시**한다.

○ 지원대상자는 **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**의 경영위기 및 사업실패로 인한 법적 분쟁 대응(원고 또는 피고로 소송 수행) 및 법률 자문이 필요한 재도전기업인이며,

- **'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신청사건,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 및 행정사건'**에 대해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○ 재도전기업인이 **무료법률구조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「재도전센터」에서 사전 상담**을 통해 **"무료법률구조확인서"를 발급**받아 **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**을 해야 한다.

[기대효과]

□ 정부는 **「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」을 국정과제로 제시**하고, **'창업 → 성장→회생→퇴출→재창업'**으로 이어지는 **기업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**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·시행하고 있다.

생태계 주기	정책방향	주요 정책내용
창업단계	**창업실패 부담완화**	◉제3자 연대보증 폐지 제2금융권 확대('13.7) ◉정책금융기관채무 부종성 원칙 적용('13.4) ◉창업자연대보증 면제 활성화('14.1)
성장·회생	**기업실패 최소화**	◉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('13) ◉중소기업 회생제도 간소화('13)
퇴출·재창업	**재창업 성공률 제고**	◉재창업자금 대폭 확대('12:200억→'13:400억) ◉재창업기업 전용 R&D 사업 신설('13) ◉재창업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·관행 개선('13)

□ 금번 맞춤형 지원 본격 시행으로 **재도전 기업인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**을 전문가 심층상담을 통해 **정확히 진단**하고, **이에 기반한 맞춤형 처방 및 다양한 민관협업 연계서비스를 제공**함으로써 **현장의 정책 체감도가 크게 제고**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특히, 재도전기업인들은 **실패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정** 등으로 **법적 분쟁 대응이 미흡해 재기기반이 크게 훼손**되어온 측면이 있었던바, 이번 **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**으로 **보다 조속한 재기가 가능**해질 것으로 판단된다.

□ 재도전센터, 무료법률구조사업, 재도전특례보증은 신청 및 문의처는 아래와 같다.

구분	총괄		신청・접수		비고
	기관	연락처	기관	연락처	
재도전지원센터 상담	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	042-481-6846	재도전종합지원센터	02-6678-4050	온라인상담 신청 가능 (www.rechallenge.or.kr)
무료법률구조사업	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	042-481-6846	재도전종합지원센터	02-6678-4050	
	법률구조공단 발전기획팀	054-810-1047			
재도전지원특례보증	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	042-481-4385	사업장 소재지 신용보증재단	1588-7365	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우창훈 사무관(☎ 042-481-684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	재도전종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계획

□ 일시 및 장소

○ 일 시 : **2014.5.28.(水) 14:30~15:10**

○ 장 소 : **제1호 재도전 지원센터 ('행복한 백화점'* 사무동)**

*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

□ 행사 참석자

○ (내부) 한정화 **청장님**, 김일호 **중견기업국장**, 노용석 재도전성장과장

○ (외부) **박철규 중진공 이사장, 전원태 엠에스코프 회장, 강성원 공인회계사회 회장, 정구정 세무사회 회장, 김만도 재도전중소기업협회 회장, 박승자 허밀청원 회장, 채희만 법무부 검사**

* 볼릭체 표시(9명) : 수도권본부장실에서 환담 참석자

○ (기타) 최철호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·파산지원센터장, 신용회복위원회 업무지원부장, 재도전중소기업협회 회원 4명, 허밀청원 회원 3명 등

□ 행사 일정

시 간	소요	세 부 내 용	비 고
14:20～14:30	10'	▪ 내·외빈 영접	1층 → 13층 수도권본부장실
14:30～14:40	10'	▪ 내·외빈 환담	13층 수도권본부장실 (내빈 전원, 9명)
14:40～15:00	20'	▪ 개소식 - 경과보고(2분) - 축사(6분, 3명) - 인사말씀(6분, 2명) - 관계자 격려(5분)	13층 재도전센터
15:00～15:05	5'	▪ 행사장 이동 (승강기)	13층 → 1층 현판 앞
15:05～15:15	10'	▪ 제막식(除幕式) 및 사진촬영	내·외빈
15:15～	-	▪ 행사 폐회, 해산	-

참고2	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

□ 추진 배경

○ **다양한 재도전 지원 제도***가 도입·시행되고 있으나, 실패기업인들이 **재도전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**은 **여전**한 것으로 조사

* 재창업자금지원(중진공), 재창업지원위원회(신복위), 힐링캠프(재기개발원) 등

○ **기관·사업별 칸막이식 설계·운영, 재도전 기업인을 위한 전담창구 부재**로 인해,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**맞춤형 지원 곤란**한 상황

□ 설치·구성

○ **설치기관 : 중소기업진흥공단내 설치**

- 재창업자금, 역량강화, 재기컨설팅 등 **기존 사업들과의 연계가 가능**하고 재도전기업인들과의 **긴밀한 네트워크 보유**

* 정책정보 제공 등을 위한 **온라인 홈페이지**(rechallenge.or.kr) **운영 중**

○ **설치지역 : 지원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우선 설치 후 타지역 확대 검토**

- **제1호 센터 : 중진공 서울지역본부**(목동 '**행복한 백화점**'내)

○ **구성 : 중진공 + 전문인력**(파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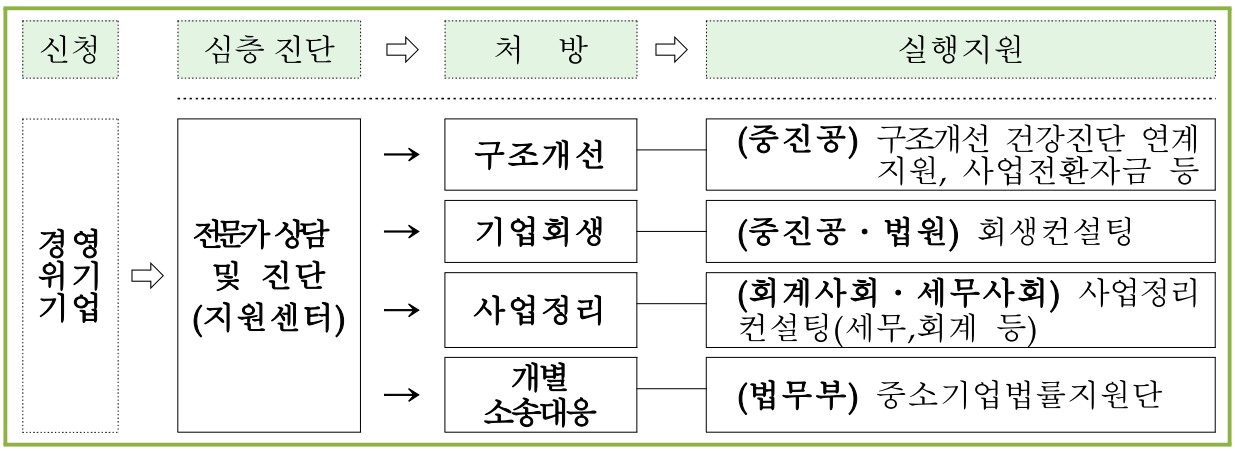
- 파견 전문인력 :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, 공익법무관(법무부), 신용상담사(신복위), 변호사(구조공단), 세무사(세무사협회), 회계사(회계사협회), 재기기업인(멘토) 등

□ 운영방안

○ 경영위기기업 및 재도전기업인을 대상으로 **전문가 심층상담과 진단**을 통해 **맞춤형 처방 제시** 및 **지원사업 연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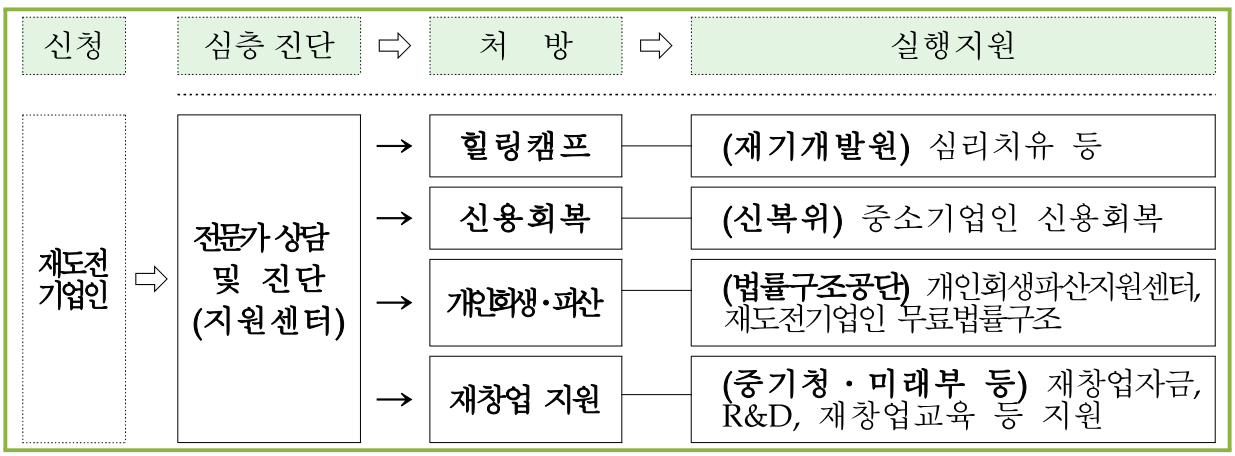
- **경영위기 중소기업** : 신속한 기업회생 및 사업정리 지원

< 경영위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세스 >



- **재도전기업인** : 심리치유 및 재창업 교육 후, 신속한 신용회복을 통한 재창업 지원에 초점

< 재도전기업인 맞춤형 지원 프로세스 >



○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**온라인 상담 창구 개설***하여 **신분 노출을 꺼리는 재도전기업인**에 대한 상담 활성화

* 중소기업 재기지원시스템(www.rechallenge.or.kr) 운영

□ 문의처

○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, 우창훈 사무관 (042-481-6846)

○ 재도전종합지원센터 (전화 : 02-6678-4050, 홈페이지 : www.rechallenge.or.kr)

참고3	재도전기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

□ 추진배경

○ **기업 실패 상황**에서는 **다양한 법적 분쟁 발생 및 법률적 자문이 필요***하나, 재도전기업인 차원의 적절한 대응 미흡

* 사업정리 시 연대보증채무 등 부채, 국세·지방세 체납, 차입에 따른 압류 등 법적 대응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(중소기업 실패 및 재창업 실태조사, 중소기업진흥공단, 2013년)

- 실패기업에 따른 **손실 최소화**를 통한 **재도전 기반 마련** 위해 사업정리 시 **채권·채무 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** 등 **지원 필요**

□ 지원대상

○ 경영위기 및 사업실패로 인한 법적 분쟁에 대응(원고 또는 피고로 소송 수행) 및 법률 자문이 필요한 기업인*

* 현재 법률구조의 대상자는 국민(자연인)으로 한정, 법인의 경우(회생기업 등)는 향후 도입 여부 검토

- (지원대상자) **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인 자**로서 "재도전종합지원센터"의 무료법률구조확인서를 받은 재도전기업인

* 무분별한 구조 신청의 남용 방지를 위해, 「재도전지원센터」('14.4.28. 개소) 사전 진단을 통해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

- (지원대상사건) '**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신청사건,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 및 행정사건**'에 대한 무료법률구조

* 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

□ 지원내용

○ 재도전 기업인을 위한 법률상담, 소송지원, 기타 각종 법률적 지원

-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비용*, 인지대,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지원

*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소송 수행으로 별도 소요비용 없음

□ 지원절차

신청	⇨	진단 및 법률구조 신청	⇨	지원결정 및 사건처리
재도전기업인→센터		재도전지원센터		법률구조공단

□ 문의처

○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, 우창훈 사무관 (042-481-6846)

○ 재도전종합지원센터 (전화 : 02-6678-4050, 홈페이지 : www.rechallenge.or.kr)

○ 대한법률구조공단 (전화 : 054-810-1047)

참고4	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

1. 시행목적

○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

2. 주요 내용

○ **시행기간** : 2014. 5. 28. ~ 별도 통보 시

○ **대상기업(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)**

1) 대위변제기업 :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

2) 재도전 기업주*가 운영중인 기업

* 재단이 대위변제한 기업과 아래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본 특례보증 신청기업의 대표자(대표이사 포함)를 말함
① 개인기업 : 대위변제기업의 대표자, 공동경영자, 실제경영자
② 법인기업 : 대위변제기업의 대표이사, 실제경영자, 무한책임사원

○ 보증한도 :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로 운용

○ 보증비율 및 보증료 : 100% 전액보증, 연 2.0% 고정

○ 재보증비율 및 재보증료율 : 80%, 연 2.0% 고정

3. 기타

○ 본 특례보증과 관련된 대출금의 사용내역, 기업의 신용도 변동 상황 등을 점검하여 부실징후 예방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실시

4.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보증운용절차

단위업무	세 부 사 항
보증신청 서류 안내·접수	▪보증상담 및 보증신청서류 접수 ☞ 재단 전담부서 또는 재단 각 지점 상담·접수
현장실사	▪보증신청기업 사업장 현장실사 ☞ 보증신청서의 진위 여부, 사업성 및 기술성,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
보증심사 (도덕성평가표 작성)	▪신용조사서 및 품의서에 의해 의해 평가 실시 - 특례보증 심사검토표에 의해 저촉유무 점검 ▪보증금액 한도사정 : 재단「보증심사운용요령」에 따라 한도사정
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 평가	▪구 성 :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(전문가 7인으로 구성) ▪평가절차 및 내용 - 부실발생경위, 기술성, 사업성, 도덕성 등을 평가 - 대표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 응답(필요시) - 특례보증 지원여부 결정
보증실행	▪회생지원보증을 먼저 실행하여 관련 구상채권을 회수하여 기업완제 처리 후 신규보증 실행
사후관리	▪보증지원 후 매 1년마다 현장조사를 통해 사후관리 실시 ☞ 사후관리 시「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사후관리표」작성